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황우진
전화 031-5182-4290 / 팩스 031-5182-4555

보도자료
2024. 10. 29.(화)

여론조사업체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 2명 기소
- 여론조사 관련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판단, 기소한 최초 사례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유명 여론조사업체 甲의 **여론조사 노하우 관련 영업비밀을 빼내 동종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려 한 甲업체의 前전국총괄실사실장과 지방실사팀장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으로** 오늘 (10. 29.)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공소사실 요지는
 - A와 B는 공모하여, '21. 5. A는 B에게 '여론조사 비용에 관한 자료, 면접원 관리 자료를 USB에 받아놓아라'고 부탁하고, B는 피해 회사의 서버에서 영업비밀인 위 자료들을 USB에 옮겨담아 A에게 전달하는 등 유출하고, 피해 회사에 불상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 수사 결과, 피고인들이 유출한 **피해 회사의 핵심노하우는 △ 여론조사 면접원 관련 DB자료**(공정성 있는 여론조사를 위해 면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 **△ 조사비용 관련 자료**(면접원 수당 등 조사경비 일체가 망라된 경영상 중요 영업정보) 등입니다.
-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그간 주로 제조업체의 기술유출 행위를 단죄해왔는바, 이 사건은 지식·정보 제공 분야인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노하우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한 최초 사례**입니다.

-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가 수십년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형성해온 핵심 영업비밀을 빼돌려 사익을 취하려 한 것인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 수원지검은 앞으로도 국내 업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첨단기술 또는 노하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시장교란이나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1 피고인 [2명]

- 피고인 A(여, 前 甲회사 전국총괄실사실장, 약 20년 근무)
 - 피고인 B(여, 前 甲회사 지역실사팀장, 약 13년 근무)
- ※ 피고인들 모두 현재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 간부로 근무중

2 공소사실 요지

- A(피해 회사 甲의 전국총괄실사실장)와 B(甲의 지역실사팀장)는 공모하여,
 - '21. 5. A는 B에게 '여론조사 비용에 관한 자료, 면접원 관리 자료를 USB에 받아놓아라'고 부탁하고, B는 피해 회사의 서버에서 영업비밀인 위 자료들을 개인 USB에 옮겨담아 A에게 전달하는 등 유출하고, 이와 같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피해 회사에 불상액의 손해를 입힘 [부정 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3 주요 수사 경과

- '21. 12. 피해 회사 고소(서울경찰청)
- '23. 9. 사건 이송(서울중앙지검 → 수원지검, 피의자 주소지 관할)
- '23. 10.~'24. 1. 甲 피해 회사 조사, 유출자료 분석 등
- '24. 1.~'24. 10. 피고인 A, B 조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재분석 등

4

수사의 의의

① 여론조사 관련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판단, 기소한 최초 사례

- 우리청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그간 주로 제조업체의 기술 유출 행위를 단죄해왔는바, 이 사건은 서비스 산업인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노하우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한 최초 사례
- 피고인들이 유출한 자료는 피해 회사가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면서도 효율적 여론조사를 통한 비용 절감을 목표로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획득한 중요 영업비밀에 해당

② 영업비밀성 판단에 여론조사 방식의 특수성 감안

- **전화 면접원 관련 자료의 중요성**
 - 단순 선호도를 묻는 간단한 조사는 물론, 전문적 주제나 다양한 계층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조사에서는 면접원의 역할이 특히 중요
 - 숙련된 면접원은 응답자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고 돌발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바, 단기교육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여론조사업체의 중요 자산

《 면접원 관련 자료 》

- ARS 조사에 비해 전화면접조사는 특정 이슈나 현안에 대한 무관심층까지 답변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100% 전화면접 방식일수록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 대부분 프리랜서 신분인 면접원은 조사 실행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 형태로 조사를 수행하는데, 여론조사 수요가 연중 일정하지 않아 적시에 양질의 면접원을 동원하는 역량은 여론조사업체의 핵심 경쟁력
- 경쟁력 있는 여론조사업체들은 신규 면접원들의 통화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교육을 실시하고, 근속기간, 전문성과 경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면접원 평가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인력 관리
- 이 사건에서 유출된 영업비밀은 면접원의 숙련도 향상과 효율적 관리 방법, 다양한 분야의 여론조사에 대한 체계적 기획 방안까지 포함

- 면접원 관련 DB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긴급하게 실시되는 여론조사 수주 경쟁에서 피해 회사가 상위 등급 면접원을 확보하는 데 지장 초래

● 조사비용 관련 자료의 중요성

- 여론조사 입찰에서 입찰가는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은 프로젝트별로 지급된 면접원의 수당 등 제반 경비 일체가 망라 되어 있어 제조업체에서 상세한 제조원가가 유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 조사비용 관련 자료 》

- 여론조사 공개입찰에 참여한 경쟁사가 과거 해당 분야 조사경험이 없다면 예산 산정, 능력과 경험을 고려한 면접원 배분, 면접원 투입 규모, 조사 기간과 비용 등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여 경쟁력에서 큰 차이
- 유출된 조사비용 자료를 넘겨받은 경쟁업체로서는 매우 쉽게 예산을 책정하고 피해 회사에 비해 낮은 가격을 제안할 수도 있어 프로젝트 수주에 결정적 영향 초래

③ 특수 분야 서비스업체의 핵심 노하우 보호에 최선

● 서비스업체의 핵심 노하우는 제조업체의 첨단기술만큼 중요

-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가 수십년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형성해온 핵심 영업비밀을 빼돌려 사익을 취하려 한 것인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도의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안

● 신뢰받는 여론조사업체 보호 필요성

- 여론조사 시장에서 장기간 신뢰도를 쌓고 검증된 업체의 노하우를 빼돌려 설립한 업체가 부실한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왜곡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제공 서비스 분야까지 '영업비밀'을 적극적으로 해석

5 향후 계획

-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국내 업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첨단기술 또는 노하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기술유출범죄에 따른 시장교란이나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음 〰